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태 · 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 위촉 근거 마련 등>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60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1.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 위촉 근거 마련 등 ····· 3

※ 참고자료 ····· 9

1. 주민감시원 운영현황(2023년) ····· 9

2. 주민감시원 채용 공고(예시) ····· 10

Ⅰ. 제안경위

2024년 10월 11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지역 주민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며, 지정 이후에도 생물다양성 악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나, 지정 지역의 범위가 넓고 소관 부처인 지방환경청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는 주민환경감시원 제도를 통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감독 공백을 막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감시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의 실천목표 중 보

호지역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을 지속한다는 명시에 부합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보호지역 수용성을 높여 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기여한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그로 인해 관리조직의 유지가 불투명해 향후 보호지역 확대 정책에 있어 지역주민의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감시원의 자격과 활동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 위촉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 등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지도·감시 및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주민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③ 주민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 등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이하 "주민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지도·감시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원을 위촉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주민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위촉된 주민감시원이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주민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

1)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등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2].

환경부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자연생태계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04년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터 주민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여 왔는데[3],

[주민감시원 제도 개요]

○ **(목적 및 연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자연생태계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04~)
- 보호지역 관리기관(지방청,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

○ **(활 동)** 시설물 점검, 정화활동 수행 및 탐방객에 의한 생태계 훼손행위 계도 등 수행

○ **(대 상)** 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 **(운 영)** 환경부(지방환경관서)에서 직접 채용·운영

환경부: 사업계획 수립 ➡ 지방환경관서: 운영계획 수립 ➡ 채용 공고 ➡ 채용.교육 ➡ 사업시행

※ 출처: 환경부

[최근 5년간 주민감시원 제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액	2,923	2,999	2,775	2,880	2,741
집행액	2,663	2,671	2,605	2,751	2,582

※ 출처: 환경부

[2023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주민감시원 운영현황]

구 분		운영인원(명)	운영기관
생태.경관보전지역 (8개소)	소황사구(보령시)	2	금강유역환경청
	섬진강수달서식지(구례군)	2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산봉붉은박쥐서식지(함평군)	1	
	거금도 적대봉(고흥군)	2	
	동강유역(정선,영월,평창군)	50	원주지방환경청
	하시동·안인사구(강릉시)	2	
	왕피천(울진군,영양군)	92	대구지방환경청
	운문산(청도군)	9	
	소 계	160	

※ 출처: 환경부

3) 참고자료1. 2023년 보호지역 주민감시원 운영현황

동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등으로 인하여 2024년부터 환경부 소관의 주민감시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주민감시원을 통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시설물 점검, 정화활동 수행 및 탐방객에 의한 생태계 훼손행위 계도 등이 수행되지 못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주민감시원 위촉 근거 및 이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민감시원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주민감시원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160명의 주민감시원 중 88.8%인 142명이 특정지역(왕피천, 동강유역)에 치중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자체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경북 울진군, 2024년 예산 3.5억원 편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주민감시원 운영현황(2023년)

구 분		운영인원(명)	운영기관
총 계		207	
생태.경관보전지역 (8개소)	소황사구(보령시)	2	금강유역환경청
	섬진강수달서식지(구례군)	2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산봉붉은박쥐서식지(함평군)	1	
	거금도 적대봉(고흥군)	2	
	동강유역(정선,영월,평창군)	50	원주지방환경청
	하시동·안인사구(강릉시)	2	
	왕피천(울진군,영양군)	92	대구지방환경청
	운문산(청도군)	9	
	소 계	160	
습지 보호지역 (30개소)	낙동강하구(부산시)	2	낙동강유역환경청
	우포늪(창녕군)	5	
	무제치늪(울산시)	1	
	화엄늪(양산시)	1	
	신불산고산습지(양산시)	1	
	밀양재약산습지(밀양시)	1	
	화포천습지(김해시)	1	
	두웅습지(태안군)	1	금강유역환경청
	물영아리오름(서귀포시)	1	영산강유역환경청
	담양하천습지(담양군, 광주시)	2	
	신안장도습지(신안군)	1	
	제주 물장오리(제주시)	1	
	제주 동백동산(제주시)	1	
	제주 숨은물벵듸(제주시)	1	
	순천 동천하구(순천시)	2	
	섬진강 침실습지(곡성군,남원시)	2	
	장록습지(광주시)	4	
	대암산 용늪(인제군)	4	원주지방환경청
	한반도습지(영월군)	4	
	용양보습지(철원군)	1	
	충주 비내섬(충주시)	2	
	상주공검지(상주시)	2	대구지방환경청
	문경돌리네(문경시)	2	
	운곡습지(고창군)	3	전북지방환경청
	고창 인천강하구(고창군)		
	월영습지(정읍시)	1	
	소 계	47	

2. 주민감시원 채용 공고(예시)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 2023 - 42 호

2023년도 왕피천유역 생태 · 경관보전지역 주민환경감시원 채용 공고(2차)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주민환경감시원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 채용개요

❍ **모집인원** : 19명

❍ **접수기간** : **2023. 2. 24(금) ~ 2023. 3. 7(화)**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 시간은 평일 09:00 ~ 18:00 까지임(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우편 주소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계곡로 1720, 왕피천환경출장소

❍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보전지역에 연속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순찰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 과거 주민환경감시원으로 근무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실제 거주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과금영수증 등) 또는 주민대표(이장 등)의 사실확인서를 신청서 접수 시 제출(**'20.1.15 실무협의회 결정사항**)

※ 지원가능 지역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왕피리·광회리, 근남면 구산3리, 수곡2리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3리

-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자 및 타업종에 종사하는 자 참여제한

※ 채용 이후 자영업자 및 중복 취업자로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 **우대사항**(서류 및 면접심사 시 가점 부여)

- 취업취약계층

①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②장애인 ③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④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⑤북한이탈주민 ⑥결혼이민자 ⑦성매매피해자 ⑧위기청소년 ⑨갱생보호대상자 ⑩여성가장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노숙인 ⑬('21년 한시 적용사항) 코로나10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비속
- 환경(생태)관련학과 졸업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차량(이륜차 포함) 소유 및 자가운전가능자, 국가 및 자치단체의 환경관련 표창 수상자 등

❍ 결격사항

- 서류·면접 심사 시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고용기회 미부여
- 근무 중 발생한 사실 등을 누설하는 등 서약 위반자는 위반사실이 발견된 날로부터 3년간 채용금지
- 전년도 근무수칙 위반으로 경고조치 받은자
- 고용해지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는 5년간 채용금지

❍ 기타 유의사항

-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20% 감점하여 선발과정 진행
- 중도탈락 및 이직 후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주민감시원 신청서 1부(붙임2 양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2부(붙임3, 붙임4 양식)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붙임5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 보전지역 등 지원가능지역 실제 거주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과금 영수증 등) 또는 주민대표(이장 등)의 사실확인서(과거 감시원 근무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에 한함)

❍ 환경(생태)관련학과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취업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증명서, 표창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 전형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35% 반영)

- 자격요건 확인 후 2배수 선발, 대상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 실시

❍ **2차 면접심사**(65% 반영)

- **면접일시** : 추후 통보
- **면접장소** : 왕피천환경출장소(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계곡로 1720)

❑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합격자** : 개별통보('23.3월중 예정)

❍ **최종합격자** :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공고('23.3월말 예정)

※ 홈페이지 : http://www.me.go.kr/daegu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상반기) 채용일로부터 5개월, (하반기) '23.8월~12월(5개월)

※ 채용일정, 예산 등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인원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일 8시간 근무 원칙(주말 근무 포함, 주 2일 휴무)

❍ **근무장소** :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일원(9개초소 및 출장소)

❍ **일 급** : 76,960원/일(예산범위 내 여비 별도지급, 4대보험 가입)

❑ 주요임무

❍ 보전지역 순찰, 불법행위 감시·계도, 환경정화활동 등

❑ 기타사항

❍ 초소 및 출장소의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채용심사 실시

❍ 합격통지 또는 채용계약 후 자격요건 등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궁금하신 사항은 왕피천환경출장소(054-783-9372~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